

## 약관 신구조문 대비표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	비고
가상계좌 자금관리서비스 이용약관			
제 3 조 (이용 기관의 제한 및 의무)	<p>4. “갑”이 가상계좌를 개설하여 제2조 제2항에 명시한 집금 목적이 아닌 재판매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불건전한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<u>가상계좌에 대한 송금인 및 송금목적 등 거래 내역을 즉시 요청할 수 있고, 이후 정기적으로도 요청할 수 있으며, “갑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</u></p>	<p>4. “갑”이 가상계좌를 개설하여 제2조 제2항에 명시한 집금 목적이 아닌 재판매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불건전한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<u>가상계좌 사용목적을 확인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	